

2014년 6월 30일

미 농무부 농업마케팅청 Anne L. Alonzo 청장님

미 무역대표부 Sharon Bomer Lauritsen 농업 부대표님

존경하는 농무부 청장님과 무역대표부 부대표님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유기식품생산법(1990, 이하 '미국 유기식품법'이라 한다)과 국가유기프로그램(이하 'NOP'라 한다)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는 유기 농산품의 인증에 관한 미국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 유기식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미국 유기식품법과 NOP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는 가공식품은 2014년 7월 1일자로 한국 유기식품법의 요구사항과 최소한 동등하게 생산·취급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제공하는 유기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서한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을 따른다면, 미국 유기식품법과 NOP에 따라 생산되고 취급되는 가공식품은 2014년 7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한국 유기식품법에 따라 생산 및 취급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 제품들은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미국 농무부의 유기 로고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유기 로고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매, 표시 및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2014년 6월 30일자 서한으로 대한민국 유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서한과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과 부속서 2에서 정한 유기작업반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 농무부의 농업마케팅청, 해외농업청 및 무역대표부와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희중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대한민국

부속서 1

A. 미국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한국의 식품공전 1.2.29항에서 정의한 “가공식품”으로서, 유기 원재료를 95%이상 함유하여야 하고, 미국 내에서 최종가공이 이루어져야 함
2. 미국 제 7 연방법령 제205항에서 미국 농무부(USDA) 유기인증프로그램 (NOP)규정에 따라 유기로 인증 받은 제품
3. 항생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사과 또는 배에서 유래한 원재료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
4. 금지된 농약, 방사선 조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미국 제 7 연방법령 제205항에 따라 금지된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고 취급되었음이 미국 유기인증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제품; 그리고
5. 금지된 물질과 방법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한국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 및 제 31조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요구사항과 해당하는 경우 후속 규제조치를 적용 받게 됨

B. 유기가공식품으로서 한국으로 수입되기 위한 상기 A항에 따른 미국산 제품 (이하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유기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만 하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MAFRA) 유기 표시 또는 USDA 유기 인증표지, 혹은 이들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

C.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은 미국유기프로그램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동 부속서의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가공식품 수입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D.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프로그램은 참조표준으로서 ISO 17011을 적용하여 미국 유기인증프로그램이 인정한 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E. 미국 농무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지한다:

1. 미국 유기인증프로그램이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정지위에 대한 변경사항; 그리고
2. 동 부속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내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 또는 최종 개정사항

F. 한국의 사전통지에 따라서 미국 농무부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의 공무원이 미국 유기프로그램의 관련 규제당국 및 인증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주기적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농무부는 해당 규제당국의 사무소, 인증기관의 사무소, 인증기관이 미국 내에서 인증한 생산시설 및 농장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현장평가를 수행하도록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협력하고 지원한다.

G. 미국 농무부는 매년 다음 문서를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측에 제공한다;

1. 동 부속서에 따라 수출된 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
2. 모든 관리감독 또는 심사과정에서 미국 농무부가 파악한 부적합의 유형 및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 농무부가 취한 단계를 포함하는 보고서; 그리고
3. 미국 농무부의 유기표준에 대해 인정을 한 미국 농무부 유기제도 인증기관 목록

부속서 2

1. 미국과 한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농무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자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유기작업반에서의 공동 작업을 위해 노력한다.
2. 유기작업반의 임무는 양자 간의 교역을 촉진하고, 유기농산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의 농무부 간의 규정과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3. 유기작업반은 이 협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 및 인정범위 논의, 확인된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진척도 평가, 유기농산품과 관련된 최선의 실천 및 다른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동 서한의 서명 후 1년 이내에 회의를 갖는다. 유기작업반은 양국의 별도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다.